

부산범천2지구 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특별공급 안내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5 예정)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bc2-centralhill.c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3-124번지 일원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공급대상 : 총 건설호수 498세대 중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104세대
- 임대조건 및 임대료

대상지구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80%)	
부산범천2 1블록	039.9100A	39A	26,240,000	5,200,000	21,040,000	355,900
	051.5400A	51A	41,210,000	8,200,000	33,010,000	428,400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가능(자세한 사항은 8.25 모집공고문 확인)

○ 주택면적

대상지구	주택 타입	건설 호수	금회공급	주택 공급면적(m ²)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부산범천2 1블록 (LH센트럴힐)	39A	40	104	60.0315	39.9100	20.1215
	51A	64	64	77.5251	51.5400	25.9851

□ 공급일정

모집공고	특별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입주(예정)
'23.08.25(금)	'23.09.11(월)	'23.10.05(목)	'25.02월
일간지,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apply.lh.or.kr)	-	

-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5 예정) 현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필요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신지역 개발사업 등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3.08.25. 예정) 현재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에 있는 분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동·호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즉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로 선정된 분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단, 각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23.08.25 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한 예비대상자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 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청약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첨,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LH청약센터에 게시된 팜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bc2-centralhill.co.kr)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시에도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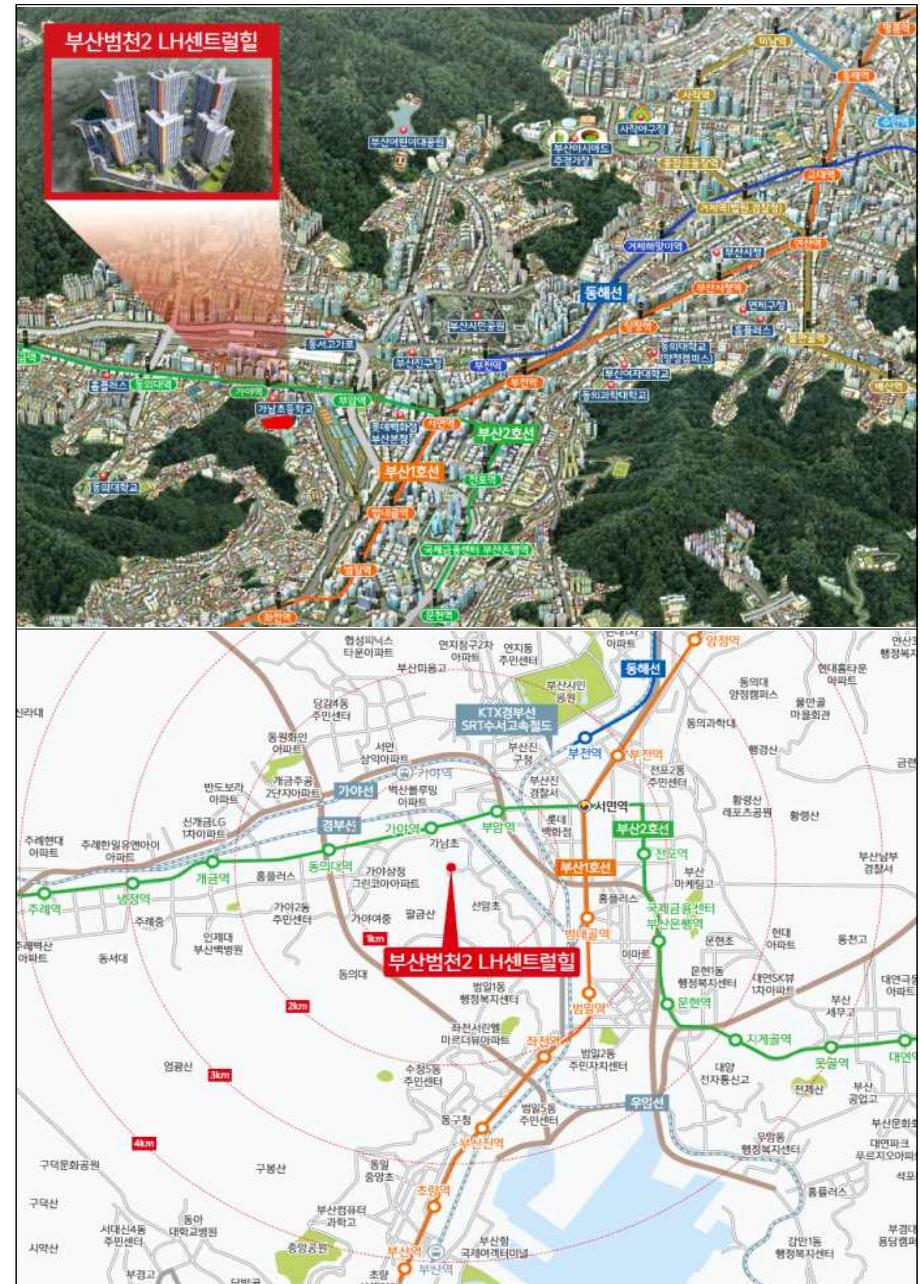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 (T.051-460-5457)

2023.0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붙임1

위치도 및 교통망도



불임2**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총 490세대 중 | 10년공공임대 104세대, 분양주택 394세대

**불임3****단위세대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아이소
39A	<p>세탁실 현관 주방/식당 거실 침실 파우더룸 욕실 발코니 실외가실</p>	
51A	<p>현관 침실2 주방/식당 거실 침실1 욕실 발코니 실외가실</p>	

불임4 | 동호배치도

- 본 문호매치 치도 내 10여 동은 10년 공급밀약으로 별도금을 물 예정입니다.
- 허위 표시 우편번호가 표기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우편번호에 은서 공급되어 있어 글씨가 깨끗합니다.